

<b>주세과세표준신고서</b>						처리기간	
년 월분( 월 출고분)						즉 시	
<b>1</b> 제 조 자	① 상 호(법인명)		② 사업자등록번호				
	③ 성 명(대표자)		④ 주 민(법 인) 등 록 번 호				
	⑤ 전 화 번 호		⑥ 면 허 번 호				
	⑦ 제조장소재지		⑧ 신고구분	정 기	수정신고	기한후 신고	
<b>2 신고 내용</b> (단위 : l, 원)							
구 분	출고수량 (기준도수 환산)	출고금액	주 세				교 육 세
			과세표준	산출세액	공제(감면) 세 액	납부(환급) 세 액	납부(환급) 세 액
⑨ 총 출 고							
⑩ 면 세 출 고							
⑪ 미납세 출고							
⑫ 환 입 계							
⑬ 차 가 감 ( ⑨-⑩-⑪-⑫ )							
⑭ 가 산 세	·신고불성실가산세(⑬×10%)						
	·납부불성실가산세(⑬×일수×5/10,000)						
⑮ 납 부(환 급)할 세 액 ( ⑬ + ⑭ )							
<p>주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 고 인 :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 font-size: 1.2em;">세 무 서 장 귀하</p>							
구비서류 : 1. 주류출고명세서 1부 2. 주류수불상황표 1부 3. 환입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(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) 4.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(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)							수수료
							없 음

## ※ 작 성 요 령

◦ 관리번호란 및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.

### ① 제조자란

①~⑧ :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구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.

### ② 신고내용란

⑨총출고 : 주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(환입분 포함)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◦ [별지 제5호서식 부표 1] 주류출고명세서의 과세출고+ 면세출고+ 미납세출고분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

⑩면세출고 : 주세법 제31조 및 제3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출고된 주류(환입분 포함)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◦ [별지 제5호서식 부표 1] 주류출고명세서의 면세출고분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

⑪미납세출고 : 주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출고된 주류(환입분포함)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◦ [별지 제5호서식 부표 1] 주류출고명세서의 미납세출고분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

⑫환입계 = 과세분 환입분+ 면세분 환입분+ 미납세분 환입분

⑬차가감 : ⑨총출고-⑩면세출고-⑪미납세출고-⑫환입계

⑭가산세 : 주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기재합니다.

단,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합니다.

⑮납부(환급)할세액 : ⑬차가감+ ⑭가산세